제295회 정례회
교육위원회

서울특별시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
(장인홍 의원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장 인 홍 의원
(더불어민주당, 교육위원회)

□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장인홍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,

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
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
청소년단체 운영 방식이 학교 중심에서 지역 단위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

향후 청소년단체가 지역 단위에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.

주요내용으로는

첫째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9조 및 제48조에 근거해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행정기관에는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

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,

둘째,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하는 「청소년정책 기본계획」에 청소년단체가 활동의 특성화·전문화를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바,

교육감이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관련 기관들과 청소년단체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,

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

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